

# 인공지능이 에디슨?...최초 국민 설문결과 나온다

- 일반 국민, 20~30대 젊은층, 연구원 참여가 높은 가운데 성황리에 종료 -
- 인공지능 기술수준에 대해 일반 국민은 동반자, 전문가는 도구로 평가 -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인공지능(AI)이 발명자가 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국내 최초로 실시했던 「인공지능 발명자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의 결과를 특허청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한다고 14일 밝혔다.

\* 특허청 누리집 → 지식재산제도 → 인공지능과 발명 →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 <설문조사 총 1,500여 명 참여, 뜨거운 열기...일반인과 젊은층 참여율 높아>

설문조사는 ①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일반인용과 ②인공지능 전문가가 참여하는 전문가용으로 구분해 지난 7월20일부터 9월30일까지 실시했다. 일반적으로 특허청의 설문조사에는 변리사, 특허출원인 등이 주로 참여했음에 반해, 이번 설문조사에는 일반인 1,204명, 전문가 292명 등 총 1,500여명이 참여해 일반 국민들의 관심도가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붙임1]

일반인용 설문조사에서는 20~30대가 약 50% 참여해 젊은층의 관심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고, 전문가용 설문조사에서는 변리사(48.6%) 이외에 대기업·공공연구기관 연구원이 33.6% 참여해 인공지능 기술 전문가의 참여율도 높게 나타났다. [붙임1]

## <일반인, 인공지능은 '발명 동반자' 대(vs) 전문가, 인공지능은 '발명 도구' 인식 차이>

인공지능이 발명에 어느 수준으로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일반인들은 70%가 발명 동반자라고 답했음에 반해, 전문가들은 66%가 아직은 사람을 보조하는 단순 도구에 불과한 것으로 응답했다. [붙임1]

일반인은 번역, 상담, 검색과 같은 일상생활에서 챗 지피티(Chat GPT) 등 성능이 향상된 인공지능을 활용하다보니 인공지능의 개발속도가 매우 빠르다고 인식함에 비해, 전문가는 발명 개발 등 전문분야에서 아직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평가한 것이다.

## <인공지능 발명자 인정에는 부정 의견 다수...특허권은 사용자에게 부여해야>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에서 인공지능을 발명자나 특허권자로 인정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많아\*, 인공지능이 아직까지는 법률상 권리, 의무의 주체로서 역할을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느끼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붙임1]

\* 인공지능의 발명자 인정: 반대 60.8%, 인공지능의 특허권자 인정: 반대 75.6%

만약 인공지능이 발명에 기여한 것을 인정해 그 발명에 대해 사람에게 특허권을 부여해야 한다면, 인공지능 사용자가 그 특허권을 가져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붙임1]

\* 인공지능 사용자(예: 인공지능 기반을 활용하여 발명한 자): 50.5% > 인공지능 개발자(예: 구글의 인공지능 기반 개발자): 22.7% > 인공지능 소유자(예: 구글): 16.2% 등

또한, 일반인과 전문가 모두 인공지능이 발명에 기여한 특허는 현행 특허권의 보호기간(20년)보다 짧게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이러한 결과는 인공지능이 짧은 시간에 너무나도 많은 발명을 할 수 있어 사람의 창작영역을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붙임1]

\* 현행 특허보다 낮게 보호 또는 보호 불필요: 일반인 75%, 전문가 65%

이번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는 특허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또한, 11월말에 있을 한·일·중 특허청장 회의에서 특허청이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주제 발표를 할 예정이고, 내년에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지재권 주요 5개국(한·일·중·미·유럽) 특허청장(IP5) 회의에서도 안건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정보통신 강국인 만큼 인공지능 기술과 관련된 쟁점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관심이 높다는 사실을 이번 대국민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향후 특허청은 주요 5개국 특허청장 회의(IP5),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등과의 인공지능 관련 특허제도 논의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해 국제적으로 조화된 특허제도를 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 붙임: AI 발명자 설문조사 결과 및 설문조사 항목

담당 부서	특허심사기획국 특허제도과	책임자	과 장	신동환 (042-481-8321)
		담당자	서기관	명대근 (042-481-5736)

# 인공지능(AI) 발명자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일반인용/전문가용을 구분하여 설문 실시 : 총 1,500여명 참여



**일반인 응답자**

1,204명

**전문가 응답자**

292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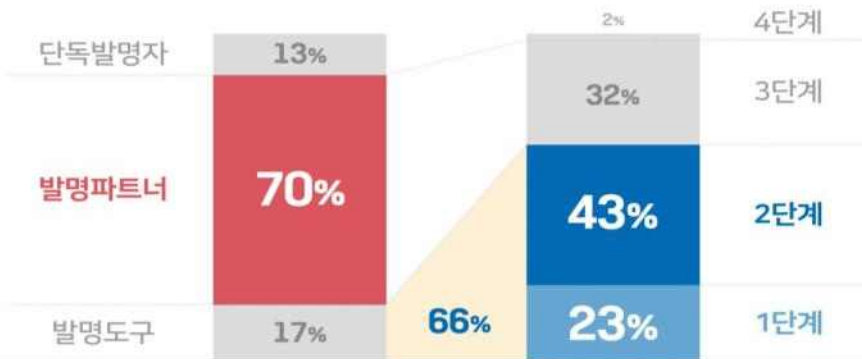


## 1 AI 발명자 설문조사 응답참여 인원

“젊은층의 관심도가 매우 높음”



## 2 일반인과 전문가 간의 AI 기술수준 인식 차이



[발명 파트너] (일반인) 70% vs (전문가) 32%    [발명 도구] (일반인) 17% vs (전문가) 66%

\* 발명 도구(1단계, 2단계), 발명 파트너(3단계), 단독발명자(4단계)

전문가대상 AI의 발명자 및 특허권자 인정 여부

4 AI의 발명자 인정 여부

[반대] 177명 (60.8%) [찬성] 114명 (39.2%)

AI의 발명자 기재 허용시 기재 방식

명세서에 AI 발명과정 기재 35.3%  
 [발명자란] ooo, AI(공동 기재) 33.3%  
 [발명자란] AI를 활용한 ooo 25.3%  
 기타 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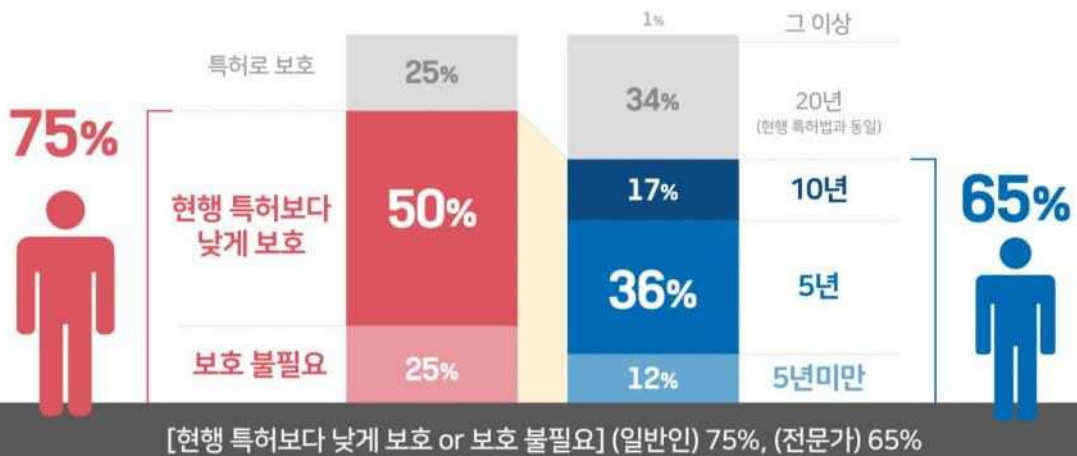
5 AI의 특허권자 인정 여부

[반대] 220명 (75.6%) [찬성] 71명 (24.4%)

AI가 한 발명의 특허권 인정시 적정 특허권자

AI 사용자(예: 구글 플랫폼을 활용하여 발명한 자) 50.5%  
 AI 개발자(예: 구글의 AI 플랫폼 개발자) 22.7%  
 AI 소유자(예: 구글) 16.2%  
 데이터 제공자 5.8%  
 기타 4.8%

3 특허권 부여시 보호정도





### 붙임 3 AI 발명자 설문조사 항목(전문가용)

0. 귀하의 직업군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되나요?(통계처리 목적으로만 활용 예정)  
① 연구원(기업 또는 연구소) ② 예술계 ③ 학생 ④ 기타( )
1. AI를 기술개발 등에 실제로 활용한 적이 있나요?  
① 예 ② 아니오
- 1-1. 위에서 ①이라고 답했다면 어떠한 사례였나요?
2. AI가 기존에 사용한 컴퓨터와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나요?
3. 위의 표를 참고하였을 때, 현재 AI 기술이 발명과 관련되어 어느 단계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나요?  
① 1단계(도구) ② 2단계 ③ 3단계 ④ 4단계(완전 자율)
4. 귀하(귀사)는 현재 AI 기술 수준을 고려할 때, AI가 발명에 어느 수준까지 기여할 수 있다고 보나요?  
① 발명자 불가(AI는 단순한 도구)  
② 공동발명자(사람과 함께 발명에 공동으로 기여)  
③ 단독발명자(사람의 개입 없이 AI 혼자서 발명)
5. 현재의 AI 기술수준을 고려하면 AI를 발명자로 기재하는 것을 허용해야 할까요?  
① 예 ② 아니오
- 5-1. 5번 질의에서 “① 예”를 선택한 경우 AI를 어떻게 발명자로 기재해야 할까요?  
① AI 관련 사항 기재허용(예: AI 다부스를 활용한 발명자)  
② AI를 공동발명자로 기재(발명자 ooo, AI 다부스)  
③ 특허출원 명세서에 AI가 발명에 기여한 과정을 상세히 기재  
④ 기타 ( )
6. 현재는 사람 또는 법인만이 특허권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AI가 발명에 일부라도 기여한 경우 해당 특허권은 누구에게 부여되어야 할까요?  
① AI 개발자 ② AI 소유자 ③ AI 사용자  
④ 데이터 제공자 ⑤ 기타 ( )

